
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-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

2. 주요 개정 내용

-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4항)
 - 지출 및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전승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생략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(안) 전문 별첨

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훈령(안)
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승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승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전승지원금 사용 확인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전승지원금 사용 확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승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승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</u>